

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2 ~ 35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12. 5. 17.
제 출 자	거창군수

1. 개정이유

○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일부개정법률이 2012. 1. 17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군에 위임된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은 물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지역경제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규정 신설 (안 제13조의2)
 -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 부터 오전 8시까지
 - 의무휴업일은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업과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개정 취지에 적절하게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매월 2회로 하며, 두번째 일요일과 네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

-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붙임)

다. 그 밖에

- 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- 2) 입법예고(2012.3.26~4.14) : 특기사항 없음
- 3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) 군수는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명하여야 한다. 다만, 연간 총매출액 중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.

1. 영업시간 제한 :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
2. 의무휴업일 :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제13조의2(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) 군수는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명하여야 한다. 다만, 연간 총매출액 중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영업시간 제한 :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2. 의무휴업일 :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

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○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」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○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

4. 작성자

경제과장 이 재 영